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최환술 의원 (찬성자 20명)

나. 의안번호 : 제 2048 호

다. 발의일자 : 2017. 8. 16.

라. 회부일자 : 2017. 8. 17.

2. 제안이유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 전액 출자하였고, 공익적 목적의 사업시행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법률의 위임 없이 서울시설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이사장의 해임기준을 반영함(안 제7조)

나.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안 제31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공기업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임기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임기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 해임기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재산 무상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9조제1항 준용 • 그 밖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79조 준용 • (삭제)

■ 공단재산의 서울시 무상사용 가능 조항 삭제의 건(안 제31조)

- 현행 조례 제31조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은 이것이 공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고 보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 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제76조에 따라 1983년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어린이대공원, 자동자전용도로 및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이하 '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음.
- 공단 고유의 재산은 청사와 직장어린이집 뿐으로, 이에 대해 현재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비록 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단이며 시의 공단재산 무상사용규정이 현행법상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공단의 고유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특혜시비 논란이 일 수 있어 개정안은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중 무상사용 가능조항이 있는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농수산식품공사의 해당 조례개정안이 이번 제276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시에 회부된 상태인데 서울시설공단의 경우는 공단과 서울시 모두 본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표] 서울시 투자기관 시설의 무상사용권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 발의현황(제276회 임시회)

연번	의안번호	조례명	발의자	담당부서	소관위원회	비고
1	2048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판술 의원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도시안전건설	
2	204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	
3	205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기획경제	

■ 기타사항(안 제7조제3항, 제33조)

- 안 제7조제3항은 현행 조례에 이사장의 연임기준(법 제58조제4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임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법 제58조제5항(해임기준)에 따라 이사장에 대한 시장의 해임권한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미 법정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⑧ (생략)

- 안 제33조는 현행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제79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영 제79조는 2011.3.29일 개정으로 조항번호가 삭제되어 이 같은 개정사항(‘제79조제1항’→‘제79조’)을 반영하고,

[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전(시행 2009.10.2.)	현행(시행 2017.7.26.)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후단의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이미 “이 법의 규정에 저

측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